

1. 개정이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3항 개정으로 인력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와 같은 내용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관의 인력배치 기준을 별표로 두는 내용을 규정 (안 제23조의2제1항)

- 1)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는 사회복지관 인력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업지침을 통해 최소 인력 기준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음
-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3항 개정(법률 제18618호, 2021.12.21. 공포, 2022.6.22. 시행)을 통해 “인력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하였으므로, 시행규칙 별표3의2를 신설하여 사회복지관 직원 배치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함
- 3) 다만, 부칙 규정을 통해 2025년 1월 1일까지 기존 시설이 신설된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자 함

나. 사회복지관 직원 배치기준을 신설(안 [별표3의2] 사회복지관의 직원 배치기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00. 00. ~ 00. 00.)

3) 행정규제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1항 중 “수는 사회복지관의 규모 및 수행하는 사업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를 “배치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로 한다.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운영 중인 사회복지관은 2025년 1월 1일까지 별표3의2 제1호의 개정 규정에 적합하게 그 직원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3의2]

사회복지관의 직원 배치기준 (제23조의2제1항 관련)

1. 직원 최소배치기준

구분	도 (세종시 포함)	광역시	서울 특별시
합계	12명 이상	13명 이상	19명 이상

※ 비고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소 배치기준을 위의 기준보다 강화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의2(사회복지관의 운영기준) ①사회복지관에는 사무분야와 별표 3에 따른 사업분야별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각각 두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하되, 직원의 <u>수는 사회복지관의 규모 및 수행하는 사업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u>	제23조의2(사회복지관의 운영기준) ①----- ----- ----- ----- 배치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 ~ ⑦ (생략)	② ~ ⑦ (현행과 같음)